

행 정 자 치 부

훈계·주의 요구

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 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기장군

징계대상자 기장군 ○○○○과(전 ○○과) 지방○○○○(전 지방○○○○○)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2013. 2. 1.부터 2014. 7. 14.까지 근무평정업무 관련 실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.

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 및 연구·지도직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·결정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.

기장군에서는 ‘2014. 4. 30. 기준 5급 이하 공무원 정기 근무성적평정 실시 계획’을 수립하여 2014. 4. 17. 결재(○○과-00000호)를 득하였다.

동 계획에 따라 위 관서 ○○○○과에서는 2013. 11. 1.부터 2014. 4. 30. 평정대상 기간 중 지방○○○○ ○○○ 등 4명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 순위

를 결정하여 ○○과에 제출하였고, ○○과에서는 2014. 5. 23. 근무성적평정위원회(위원장 ○○○)를 개최하여 전체 지방○○○○ 83명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결정하였다.

그러나 당초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가 변경된 채 그대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·결정됨에 따라 결국 서열 명부 순위가 변경된 결과가 초래되었다.

당 초		변 경	
소 속	성 명	소 속	성 명
○○○○과	정○○	○○○○과	김○○
○○○○과	김○○	○○○○과	정○○

조치할 사항 기장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근무성적평정 업무 추진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